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42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의자 : 박수영 · 서천호 · 곽규택  
김미애 · 조정훈 · 이인선  
이성권 · 박충권 · 김재섭  
권영세 · 최은석 · 서지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함에 따라, 자동차 · 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과의 관세협정에 따라 3,500억불 규모의 對美 투자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지원기관의 대규모 보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통상환경에서 자동차 ·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무역보험  
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주  
력산업 지원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6(무역촉진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무역진흥 및 통상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에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촉진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04조의36(무역촉진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무역진흥 및 통상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에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